

#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04
----------	-----

제 출 일 : 2026. 3. 5.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 1.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명을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로 변경
-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9조, 제13조 ~ 제16조, 제18조 ~ 제22조)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RFID) 설치 대상 확대(안 제2조·제15조)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납부필증) 규격 다양화(안 제9조, 별표1)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규정 명확화(안 제17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확대(안 제18조)
-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기준 현실화(안 제20조)

### 3. 참고사항

#### ○ 부서협의결과

1) 협의기간 : 2025. 11. 26. ~ 12. 3.

#### 2) 협의결과

- 비용추계 : 미첨부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대상 아님

#### ○ 입법예고 결과

1) 예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 31.(20일간)

2) 예고결과 : 의견제출 1건

3) 검토결과 : 미반영

##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발생억제”를 “발생 억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을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폐기물 납부필증”을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으로 한다.

8. “공동주택 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9. “종량제 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의 개별계량 장치를 말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발생억제”를 각각 “발생 억제”로 하고, 같은 항 중 “방법은”을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조 중 “자와 「식품위생법」”을 “자와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생 억제방안”을 “발생 억제 방안”으로, “발생억제를”을 “발생 억제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체를 포함한다)등”을 “(단체를 포함한다) 등”으로, “발생억제”를 “발생 억제”로, “기기등의 시설설치”를 “기기 등 시설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를 “규칙 제16조의10에 따른”으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다만,”으로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억제방법”을 “발생 억제 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로, “자 :”를 “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자 :”를 “자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6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로, “운영하는 자:”를 “개설·운영하는 자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 중 발생 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여부(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제7항 중 “발생억제방법”을 “발생 억제 방법”으로, “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종량제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억제”를 “발생 억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소형 음식점 :”을 “소형음식점 등:”으로, “전용봉투”를 “전용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동주택 : RFID기기”를 “공동주택 등: 종량제 기기”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전용수거용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다량배출사업장 :”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발생억제”를 “발생 억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부과대상)”을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 제5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구간”을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배출량”으로, “부과기준”을 “부과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가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단위부피당 또는 무게당 수집·운반·처

리비용을 적용하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하거나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봉투 판매가격”을 “배출량을 측정·기록한 후 납부 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하거나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부필증 판매가격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제9조제4항 중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공동주택 등의 수수료”로, “운영주체로부터”를 “운영주체에게”로,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주체”를 “공동주택 등의 관리·운영주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량배출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할 경우”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4조제3항 단서 중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구분될 수 있도록 업소명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를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여 사업시행자에게”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동주택에”를 “공동주택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제비용”을 “실제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장의 과실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전용수거용기가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2.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시범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를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로, “시장에게”를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수분을”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을”로, “발효건조시켜 퇴비화·사료화 혹은 소멸화하여”를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2항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2항제1호”를 “제3호에 따라 발생된 부산물은 제1호”로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는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규칙 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호 중 “제18조제2항제1호”를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제2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을 “다량배출사업장은”으로, “발생억제방법”을 “발생 억제 방법”으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등”을 “내용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를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을”로, “발생억제 처리실적을 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라”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0

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1개월 이내에 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을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호 중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수수료 부과(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

고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 및 처리계획 신고사항”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재활용하기 위해”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등에 관하여는”을 “등은”으로,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등”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자원순환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자원순환과장 양 인 수
	팀장 직위·성명	음식물자원화팀장 김 병 조
	담 당 자 성명·전화	전 은 옥 (031-590-2256)

■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등**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1. 납부필증 규격 및 가격 등

구분 (용량)	규격(cm) (가로 X 세로)	색상	판매가격 (원)	비고
10ℓ	15 × 3	노랑	420	-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바코드 등 불법제작·유통방지 표시
20ℓ		파랑	840	
120ℓ		적색	6,000	

※ 납부필증 규격의 편차범위는 10%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남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4에 따른 종량제봉투 용량에 준하여 납부필증의 용량 및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제작할 수 있다.

2. RFID 종량제 기기 수수료

구분	단위	수수료(원)	비고
RFID 종량제 기기	1kg	63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제13조제1항 관련)

###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 가.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출
- 나.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물에 행구어 배출
- 다.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사용 후 발생된 부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

### 2.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물질

- 다음 품목은 종량제봉투(일반용, 재사용)로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 시 자원 재활용이 불가하고 기계설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구분	품 목
육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 조개, 소라, 굴 등 패류 껍데기 -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감 등 핵과류의 씨
채소류	-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 옥수수껍질, 마늘껍질 등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찌꺼기	- 종이, 형겔 등으로 포장된 1회용 티백(녹차 등), 한약재 찌꺼기 등
알껍질	- 달걀, 오리알, 타조알, 메추리알 등
곡류	- 왕겨
기타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고장방지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u></p>	<p><u>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p> <p>3. ~ 6. (생 략)</p> <p>7.“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p> <p>8.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발생 억제</u>----- ----- ----- ----- -----.</p> <p>3. ~ 6. (현행과 같음)</p> <p>7. “<u>생활폐기물</u>”이란 「<u>폐기물관리법</u>」----- ----- ----- -----.</p> <p>8. “<u>공동주택 등</u>”이란 「<u>공동주택관리법</u>」 제2조제1항제1호, 「<u>주택법 시행령</u>」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및 「<u>주택법</u></p>

9. “중량제 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중량제 시행 지침」에서 정한 개별계량장치[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말한다.

10.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9. “중량제 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의 개별계량 장치를 말한다.

10. -----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  
-----  
-----  
-----  
-----  
-----.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위한 추진성과의 평가항목 및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 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생략)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 발생 억제 -----  
-----  
-----.

③ ----- 발생 억제 -----  
-----  
-----  
----- 방법은 -----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  
-----  
----- 자와 「식품위생법」 -----  
-----  
-----  
-----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발생 억제 방안 -----  
-----  
-----  
----- 발생 억제를 -----

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단체를 포함한 다)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종량제 기기등의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9조에 따른다.

⑤ 다량배출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

-----.

③ -----(단체를 포함한 다) 등----- 발생 억제-----  
기기 등 시설 설치 -----

-----.

④ -----  
-----  
-----  
-----

----- 규칙 제16조의10에 따른  
-----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

---. 다만, -----

-----.

⑤ -----  
--- 발생 억제 방법-----  
--.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는 자 :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  
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  
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제37  
조에 따라 신고(영업장 면적  
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만 해당  
된다) 후 영업을 하는 자 : 깔  
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  
식을 담아갈 수 있는 포장용  
기 비치 등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  
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  
위하는 자 :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을 담아갈 수  
있는 포장용기 비치 등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  
한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  
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자: -----  
-----  
-----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호-----  
-----  
-----  
----- 자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  
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  
위하는 자: -----  
-----

<삭 제>

<삭 제>

<삭 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  
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저  
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  
보 등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  
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  
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자가 제  
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여부(법 제14조제2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  
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 대하  
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3호----- 개설·  
운영하는 자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  
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자: -----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  
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  
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 중  
발생 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여부(위탁하여 재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⑦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은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배출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되어 계량된 자료

2. 공동주택 : RFID기기에 부착된 계측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로 배출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어 계량된 자료

3. 다량배출사업장 : 제19조제4호에 따른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억제 처리실적

제9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부과대상)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

⑦ ----- 발생 억제 방법-----

----- 시장-----

종량제봉투 -----

⑧ -----

----- 발생 억제-----

1. ----- 소형음식점 등: ---

----- 전용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

2. 공동주택 등: 종량제 기기--

----- 전용수거용기-----

3. 다량배출사업장: -----

----- 발생 억제 --

제9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 법 제14조제5

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환경부가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단위부피당 또는 무게당 수집·운반·처리비용을 적용 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하거나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봉투 판매가격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세

항-----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배출량-----

부과 기준-----.

②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

③ ----- 배출량을 측정·기록한 후 납부 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하거나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종량제봉투 --

----- . 이 경우 납부필증 판매가격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공동주택 등의 수수료----- 운영주체에게 -

대별 배분은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주체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⑤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량배출사업자에게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및 분리배출 기준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을 반영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② (생략)  
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 공동주택 등의 관리·운영주체-----.

⑤ 다량배출사업장-----  
-----  
-----  
-----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  
-----  
-----.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 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종량제 기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전용수거용기·종량제 기기에 대해서는 수집 및 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되는 8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

-----  
-----  
-----  
----- 구분될  
수 있도록 업소명 등-----  
--.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종량제 기기의 설치) ① -  
-----  
-----  
-----  
----- 공동주택  
등-----  
-----  
-----  
-----  
-----  
-----  
-----.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  
----- 할 수 있다. -----  
----- 공  
동주택 등에 -----

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종량제 기기 설치를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때, 설치되는 종량제 기기는 한국환경공단 중앙전산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 기기의 이용자가 고의·과실로 종량제 기기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 이용자에게 종량제 기기의 수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④ (생략)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  
-----  
-----.  
-----  
-----  
-----.

③ -----  
-----  
-----  
-----  
----- 실제 비용 -----  
-----.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장의 과실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전용수거용기가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2.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시범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략)  
②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3

운반 및 재활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  
-----  
-----  
-----  
-----  
-----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  
-----  
-----  
-----  
-----  
-----  
----- 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조, 영 제7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생략)

<신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 후 건조시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시켜 퇴비화·사료화 혹은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  
-----  
-----.

1. (현행과 같음)

2. 다량배출사업자는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규칙 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을  
-----  
-----  
-----  
-----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  
-----  
--.

3. 제2항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9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해 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4. 제3호에 따라 발생된 부산물은 제1호-----  
-----  
-----  
-----.

제19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

1.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  
-----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  
-----  
-----.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자가처리 실적 및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억제 처리실적을 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

3. 다량배출사업장은 -----  
-----  
발생 억제 방법-----  
----- 내용 등-----  
-----  
-----.

4. -----  
-----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  
-----  
-----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를 -----  
-----  
-----.

5. -----  
-----  
----- 1개월 이내에 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1호에 따른 -----  
-----

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하거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

가. -----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등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  
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  
· 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  
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수수료 부과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폐  
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  
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  
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생략)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  
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  
한 조치) ①·② (생략)

- ③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  
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  
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  
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1.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 및 처  
리계획 신고사항 -----  
-----  
-----  
-----  
-----  
-----

2. (현행과 같음)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  
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  
거·재활용하기 위해 -----  
-----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생략)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등에 따른다.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등은 -----  
-----  
-----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비용추계 미침부사유서

###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해당없음

### 2. 미 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3. 미 침부 사유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규정·용어 정비 및 우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관리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개정으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4. 작성자

환경국 자원순환과장

##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5A경기남양095)

1. 자원순환과-38325(2025, 11, 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5A경기남양095) 1부, 끝,

남 양 주 시 장 인



주우관 이연희

여성정책담당장 홍주희

여성아동과과장 배진위

복지국장

전일 2025. 12. 1,  
양현모

협조자

시형 여성아동과-39807

(2025, 12, 1.)

집수 자원순환과-38840

(2025, 12, 1.)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별관4층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89

/ [yhlee0127@korea.kr](mailto:yhlee0127@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남양095		
정책명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자원순환과	
	담당자명	전은옥	전화번호 031-590-225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11월 2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원순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규정 및 용어 정비</li><li>○ 현행 조례명의 간소화 및 명확화</li><li>○ 「남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관리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종량제기기 설치 및 전용수거 용기 배출 등에 관한 사항</li></ul></li></ul>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p> <p>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p>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2025년 11월 29일</p> <p><b>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b>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p> <p>자원순환과장 귀하</p>			

##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 남 양 주 시



수신 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5-91)

자원순환과-29923(2025.11.17.)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 끝.

감 사 문 *판*

주무관	<b>김주현</b>	청렴윤리팀장	<b>이정주</b>	김사팀장	대견 2025. 11. 28.
협조자				<b>박호영</b>	
시행	감서관-13711	(2025. 11. 28.)	접수	자원순환과-38459	(2025. 11. 28.)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a href="http://www.nyj.go.kr">http://www.nyj.go.kr</a>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sjh99006@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5-남양주-91		
자 치 법 규 명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평 가 당 부 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주현
입 안 부 서	자원순환과	입안담당자 직급 및 성명	환경7급 전은옥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5. 11. 28.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p>2025년 11월 28일</p> <p><b>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b> (담당자 / 연락처 : 김주현 / 031-590-4719)</p> <p><b>자원순환과장 귀하</b></p>			

## 붙임4 규제심사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 남 양 주 시



수신 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남양주시 자원순환과-38322(2025. 11. 27.)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지원 방안과 납부필증 규격 및 가격 등의 구체화,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자구 정비 등을 위한 내용으로,
3.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끝.

## 의 회 법 무 과 장 영

주무관	조한기	규제개혁팀장	안재현	의회법무과장	2025. 11. 27.	양기영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15238	(2025. 11. 27.)		접수	자원순환과-38363	(2025. 11. 27.)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hgj1235@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 붙임5 소비자정책심의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 남 양 주 시



수신 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남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여부 검토 결과 회신

1. 자원순환과-38321(2025.11.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가 요청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구 분	내 용
검토대상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검토내용	남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검토근거	남양주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7항 및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 규칙」 제5조 (심의대상요금의 범위)
검토결과	「남양주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7항에 따른 위원회 관장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심의대상 아님

3. 향후 관련규정을 참고하시어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지 역 경 제 과 장

주무관 **이성은**      소비자경제팀      조만근      지역경제과장      전결 2025. 12. 3.      임대훈

협조자

시행 지역경제과-34912      (2025. 12. 3.)      접수 자원순환과-38967      (2025. 12. 3.)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별관4층 지역경제      / http://www.nyj.go.kr  
과 (금곡동)

전화번호 031-590-8731      팩스번호 031-590-2739      / lse201@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 붙임6 입법예고 결과

등록번호	자원순환과-934	주무관	음식물자원팀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정책과장
등록일자	2026. 1. 9.				선출 2026. 1. 9.
결재일자	2026. 1. 9.	전은옥	김병조	남경환	김정태
공개구분	비공개(5)				
협 조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의회법무팀장 한지혜				

###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5.12.11. ~ 12.31.(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1건

환 경 국  
(자원순환과)

## 입법예고 의견서 접수 및 검토 결과

의견내용	검토의견	반영 여부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가능업체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 재고 요청	○ 동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2024.8.17.) 취지를 반영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함	미반영